

당 헌
[제정 2022.12.18.]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우리 당의 명칭은 ‘열린민주당’ 이라 한다.

제2조(목적)열린민주당은 공정사회, 안전사회, 열린 복지국가를 위한 통합 사회, 포용적 성장의 번영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열린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열린민주당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5.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6.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7.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토론 또는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8.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2.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4.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 5.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 6.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다양성 추구)①우리 당은 출신, 나이,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배경과 기준을 가진 구성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 구성과 정당활동에서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실시한다.

②우리 당은 제 1항의 실현을 위하여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전당원 투표

제11조(전당원투표) ①전당원투표는 전당대회 기타 여하한 대의기관의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투표(권리당원에 한한다)를 실시한다.

1. 전당대회가 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2. 전체 당원의 10% 이상이 연명과 서명으로 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3. 최고위원회나 그에 갈음하는 임시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③전당원투표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거나 기타 공신력 있고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회의, 온라인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자투표가 아닌 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당원투표는 재적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당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당원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대의기관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 기관이다.

②전당대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대표

2.최고위원

3.상임고문

4.당 소속 국회의원

5.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7.정책연구소의 장

8.시 · 도당위원장

9.지역위원장

10.중앙당 사무총장

11.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장

④선출직 대의원은 시 · 도당별로 당원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 당원 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시 · 도당에 대하여는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⑤선출직 대의원은 시 · 도당별로 권리당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한다.

⑥제5항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전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⑦선출직 대의원의 선출 및 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권한)①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당헌의 제정 및 개정

2.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발의 및 의결

5.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기타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에 부의한 안건의 의결

②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당 대표가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 대표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 지명직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의 순위(이하 “최고위원 순위”라 한다)에 따라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최고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운영)
① 전당대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하되, 당대표가 궐위한 경우에는 최고위원 순위에 따라 의장직을 승계한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전당대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전당대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

제17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전당원투표로 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3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의 임기 만료일 60일 전부터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되, 임기 만료일 1주 전에는 반드시 다음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즉시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 5주 이내에 다음 당대표를 선출한다.

④당대표가 임기만료나 다른 사유로 공석이거나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순위에 따라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당대표의 선출 및 예비경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당 예산의 편성

5.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⑤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고, 그 경우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

제19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대표

2.원내대표

3.선출직 최고위원 3명

4.지명직 최고위원 2명

③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 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 · 감독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6. 전당원투표의 안건부의 심의 · 의결
7. 시 · 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8.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 의결
9.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심의 · 의결
10. 당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
11. 기타 당헌 ·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0조(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로 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당 대표의 임기와 같이 하되, 지명직 최고위원이 퇴임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후임자를 지명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의 선출 및 예비경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 · 주재한다.

② 상임고문, 정책연구소의 장,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고문

제22조(상임고문과 고문)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

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연구소의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책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청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권한)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 2.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 3.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 4.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제시
- 5.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 6.당원발안 심사와 당원토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5절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25조(상설위원회)①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구

성한다.

1. 노인위원회
2. 청년위원회
3. 장애인위원회
4. 노동위원회
5. 농어민위원회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특별위원회 등) 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아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아래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③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아래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을 명시하고(다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업무의 종결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구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특별기구) ① 주요 당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1. 윤리심판원
2. 당무감사원
3. 교육연수원

② 전항의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사무처

제28조(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사무직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정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사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사무직당직자는 당대표가 사무총장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정무직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2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원내대표의 선출

4.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34조(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상임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임명직·당직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선출직 이외에 다른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6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 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괄한다.

②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③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⑤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⑥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38조(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당 후원회

제39조(지정)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장 지방조직

제40조(독립성 강화)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 한다.

제41조(시·도당 등의 창당·개편·해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42조(시·도당원투표)①시·도당원투표는 시·도당의 다른 어떤 대의기관의 의결보다 우선하는 시·도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1.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2. 시·도당 위원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기관의 의결로 시·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3. 전체 시·도당원의 10% 이상이 연명과 서명으로 시·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4. 최고위원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기관의 의결로 시·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5.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시·도당원투표에 부의한 안건

③시·도당원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전자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 · 도당원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위원장) ① 시 · 도당위원장은 시 · 도당을 대표하고 시 · 도당을 통할 한다.

② 시 · 도당위원장은 시 · 도당원투표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헌이나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 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 · 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4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 · 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도당위원장

2.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 · 도당에 설치한 상설위원회의 장

3. 시 · 도당위원장이 제청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한 5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 시 · 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 · 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45조(운영위원회 권한) 시 · 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 ·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 ·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 ·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 · 도전당원투표로 의결할 사항 심의

5. 기타 시 · 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사무처 등) ① 필요에 따라 시 · 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시 · 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직능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 · 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47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 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윤리심판원

제49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 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0조(윤리심판원 구성) ① 윤리심판원은 중앙위원회 독립기구로써, 심판원장과 2명 이상의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7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② 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판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제1항의 외부 인사는 윤리심판원장의 추천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 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열린민주당 윤리규범’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상벌안의 심의 · 의결 및 확정
 - 3.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 처리 등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4.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 5.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 6.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7.시 · 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 8.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 9.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심의 · 의결로써 확정한다.
- ③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제1항 제9호와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예산과 회계

- 제52조(예산과 결산)①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 ③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 3.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 ⑥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다.

⑦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⑧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⑥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⑦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12장 선거관리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5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 제56조(선거대책기구 등)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1.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2.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 3.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4.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③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 ④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관리

제57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에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에 시·도당 공천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 아래에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심사기준) ①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열린공천) ①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원투표를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원투표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당원투표의 방법과 기준에는 가산이나 감산 요소 및 중복적용의 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제6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6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정기간 국민과 당원에게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후보자 검증을 거쳐 경선후보자 목록을 작성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선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자 순서로 순위를 정하되,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부와

순위를 제출받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기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자치구청장 · 시장 · 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 · 시장 · 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④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선거구 수는 시 · 도별 해당 자치구 · 시 · 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지역구 시 · 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 시 · 도의원선거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들간의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후보자 및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 ①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후보자 및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확정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재 ·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 · 보궐선거의 경우 당대표는 해당 시 · 도당과 협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심 등

제68조(재심) ①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재추천)①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헌 개정 등

제70조(당헌 개정안의 발의)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 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한다.

제71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당대표는 자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장 합당과 해산

제72조(합당과 해산)①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

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때에는 제2항의 청산을 거친 뒤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장 보칙

제73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③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74조(표결)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전당대회의 의결을 포함한다)은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참석자가 없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 ·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비상대책위원회)①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상당수가 궐위되거나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당에 발생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당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안정적인 당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기구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위원은 누구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은 당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2022. 12. 18, 제1호>

제1조(시행일)이 당헌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당헌개정)①제7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창당대회 이후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당헌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초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①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은 초대 당대표가 창당대회에서 지명하거나 창당대회를 마친 후 지명할 수 있다.

<2024. 5. 22, 제2호>

제1조(시행일)이 당현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